

대법원 2022. 5. 12 선고 2022다202597(본소), 2022다202603(반소) 판결

[임금 ·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5. 12 선고 2022다202597(본소), 2022다202603(반소)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4 선고 2021나52320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용, 오윤지, 이지윤, 이주혁, 유건우

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정준영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

B

판결선고 2022. 5. 12.

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4. 선고 2021나52320(본소), 2021나91 (반소)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(반소원고)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선수,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노태악, 주 심 대법관 오경미